

『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5차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

시유지를 활용해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공유재산 교환(시유림)

구미에코랜드 주변의 등산로와 연결한 사유림을 소규모 단일필지 사유림과 교환하고 사유림을 집단화하여 등산로 관리의 편의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☐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

- 위 치 : 구평동 산53번지 일원 *시유지
- 대 상 : 건물 지상 2층, 연면적 1,800m²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
- 총사업비 : 5,200백만원(국비 1,000, 시비 4,200)
 - 산출내역 : 공사비 4,600백만원, 용역비 300백만원, 감리비 300백만원
- 기준가격 : 건물 3,500백만원, 토목 등 기타 1,700백만원
- 주요시설
 - 배드민턴장, 테니스장, 운동장, 족구장 등

☐ 공유재산 교환 - 사유림 취득

- 위 치 :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산4-17번지
- 대 상 : 토지(임야) 7,000m²
- 기준가격 : 55,300,000원(m²당 7,900원/2021.1.1. 기준 개별공시지가)
- 감정가액 : 77,000,000원(2개사 평균 감정액)

【처분재산】

☐ 공유재산 교환 - 사유림 처분

- 위 치 : 구미시 부곡동 산33번지
- 대 상 : 토지(임야) 397m²
- 기준가격 : 8,575,200원(m²당 21,600원/2021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)
- 감정가액 : 86,744,500원(2개사 평균 감정액)
 - ※ 교환차금 : 9,744,500원(현금납부, 세외수입 처리)

4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 2021년도 수시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임.

○ 「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」은

-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<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>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,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2억원(국 10, 시 42)을 투입해 구평동 산53번지 일원의 사유지에 지상2층, 연면적 1,800㎡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.
- 인동, 진미 지역은 주거 밀집도가 높은 반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

-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시유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향후 센터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「공유재산 교환」은

- 시유지를 처분하고 개인 사유지를 취득하여 구미시와 사인 간에 서로 토지를 교환하려는 건으로, 취득 대상지인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산4-17번지(7,000㎡)는 구미에코랜드 구역 주변의 등산로와 연접한 임야이며, 처분 대상인 구미시 부곡동 산33번지는 개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필지(397㎡)임.
-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며, 상호 교환 대상 토지의 미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.